

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
**영업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
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**

업 종	적용대상 1회용품
식품접객업소 (테이크아웃·배달 제외)	• 1회용컵 (합성수지, 금속박) • 1회용접시 (종이, 합성수지, 금속박) • 1회용용기 (종이, 합성수지, 금속박) • 1회용나무젓가락, 1회용비닐식탁보 • 이쑤시개 (생분해 제외, 계산대 가능) • 1회용수저 · 포크 · 나이프

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50조, 별표8

단위: 만원

영업장 면적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
사업장 면적이 333㎡ 이상	50	100	200
사업장 면적이 100㎡ 이상 333㎡ 미만	30	50	100
사업장 면적이 33㎡ 이상 100㎡ 미만	10	30	50
사업장 면적이 33㎡ 미만인 경우	5	10	30